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규칙

현행규칙

최종 개정: 2018년 7월 9일

헌법재판소는 1990년 7월 5일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조직법 제10조 j)와 관련한 제2조 제2항1)의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의 규칙을 승인한다.

제1장 행정부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제1절 구성, 권한 및 운영

제1조

헌법재판소의 관리와 행정 기능은 각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처장에 속한다.

제1관 전원재판부

제2조

헌법재판소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 외에 전원재판부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직제를 수립하고, 예산법에 따른 개정을 의회에 제안한다.
- b) 헌법재판소의 채용 관련 사항을 승인한다.
- c) 직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승인한다.

1) 스페인 헌법재판소조직법 제2조

② 헌법재판소는 동법 범위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구성, 인사와 사무제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규칙은 전원재판부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공포한다.

- d) 사무처장, 경우에 따라 사무차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 e) 헌법연구관 소속의 편입을 위한 채용시험 공고기준을 승인한다.
- f) 헌법연구관으로서 임시적 제도 하에 헌법재판소에 종사할 자의 지명
- g) 헌법재판소조직법 제9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겸직금지를 결정한다.
- h)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헌법연구관의 파면 또는 퇴직을 결정한다.
- I) 국가일반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예산안을 승인하고, 적용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 속하지 않는 한, 예산을 도입하기에 적절한 수정을 제안 또는 승인한다.
 - j) 예산집행을 위한 지침을 확립하고, 지출에 관해 전원재판부 또는 경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도를 정한다.
 - k) 예산집행을 위한 지침 준수를 감독하고, 사무처장이 작성한 결산에 대해 보고받는다.
 - l) 헌법재판소장이 권한을 갖지 않으면서 재판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한다.
 - m) 감사관을 헌법재판소에 임명하고, 그의 해임에 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장의 제안에 따라 사무처장과 감사관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를 해결한다.
 - n) 본 규칙과 헌법재판소에서 준용한 다른 규칙에 의해 전원재판부에 부여되는 기타의 권한

제3조

헌법재판소장의 제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항을 심의하고 경우에 따라 선고할 수 있다.

제4조

헌법재판소장은 소장의 발의 하에 및 최소 3명의 재판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원재판부를 소집한다.

제5조

헌법재판소장의 판단에 따라 사안의 긴급성으로 기한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전원재판부의 소집은 3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처리할 사안의 특성상 권고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소집에는 심의에 필요한 안건과 관련사실 자료가 첨부된다.

제6조

전원재판부는 소집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재판관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면 유효하게 구성된 것으로 한다. 같은 조건 하에 이전에 소집된 전영재판부 회의를 앞당겨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전원재판부는 구성될 때마다 최소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였을 경우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제8조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경우, 사무처장은 투표권을 갖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원재판부 회의에 참석하고, 전원재판부의 간사 기능을 수행한다. 그밖의 경우에는 각 회의에서 지명되는 재판관이 간사로 활동한다.

제9조

재판관이 논의 중인 문제에 대한 나은 검토를 위해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헌법재판소장이나 회의 참석자 중 최소 3분의 1 이상이 이 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안의 긴급성에도 저촉되지 않는 한, 결정은 다음 회의로 연기된다. 이에 관해 불일치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이

결정한다.

제10조

1. 각 사안의 심의가 완료되면 헌법재판소장은 전원재판부 결정에 부친다. 개인 투표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 재직 연수가 낮은 순서에 따르며, 동일한 재직 연수라면 연령 역순에 의한다.

2. 헌법재판소 부소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이 순서대로 마지막에 투표한다.

제11조

1. 헌법재판소조직법 또는 본 규칙에서 가중다수결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은 회의에 참석하는 재판관의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동수인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투표로 결정된다.

2. 전원재판부의 결의는, 회의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즉시 집행된다.

제12조

1. 사안에서 필요한 경우, 전원재판부는 의결 취지에 부합하는 결의안의 초안 작성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재판관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초안은 다음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위해 보고된다.

2. 또한 전원재판부는 각 사안의 범위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위임받은 기능의 전개와 이행에 관해 전원재판부에 정기적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제13조

1. 전원재판부의 간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모든 합의된 사항을 언급하고 하단에 참석한 재판관의 이름과 성을 기재한다. 의사록은 각 회

의 종료 직후 또는 회의 즉시, 후자의 경우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해하지 않으면서, 낭독되고 승인을 위해 제출된다. 의사록은 전원재판부 간사의 서명과 헌법재판소장의 결재로 승인된다.

2. 사무처장은 의사록을 보관하고 해당 증서를 교부한다.

제2관 수장(De la Presidencia)

제14조

헌법재판소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 외에 헌법재판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 전원재판부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확정하고 공고하며, 심의를 운영하고 채택된 합의를 이행한다.

b)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서직의 공개채용시험을 공고한다.

c) 관리자 직책에 대한 공개채용을 결정하고, 제안된 자의 지명을 진행하며, 전원재판부의 사전 합의로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명된 자의 원래 소속기관에서의 휴직과 복직을 명한다.

또한 자유로운 지명절차로 채워져야 하는 기타 직책에 대한 공개채용을 결정하고, 제안된 자의 지명을 진행하며, 운영위원회의 사전 합의로 지명된 자의 원래 소속기관에서의 휴직과 복직을 명한다.

d) 평가자인 헌법재판소의 제안에 따라 헌법연구관 부서에 소속되어야 하거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제안으로 임시적 제도 하에 헌법재판소에 근무해야 할 헌법연구관을 임명한다.

e) 전원재판부의 사전 선출에 따라 사무처장을, 경우에 따라 사무차장을 임명한다.

f) 헌법재판소 업무의 감사관을 임명하고 전원재판부의 결의에 따라 퇴직을 정한다.

g) 공무원과 근로직원의 모집을 공고하고, 적절한 경우 직업 공무원의 채

용을 포함하기 위해 근무위원회의 확인을 신청한다.

h) 소속 공무원과 임시 직원을 임명하고, 퇴직을 정하며, 근로제도상 고용 계약을 승인한다.

l)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헌법재판소 직무외의 활동 행사에 관한 검직을 승인한다.

j) 승진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징계권을 행사한다.

k) 계약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한다.

제15조

또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에 해당한다.

a) 헌법재판소 소재지에 역무를 수행하는 국가안전기관에 대한 최고의 권한을 행사한다.

b) 헌법재판소 소재지에 사람의 출입과 방문에 관한 절차를 결정한다.

c)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운영에 필요한 지침과 명령을 내린다.

d) 차량이용 업무를 제공하는 당국과 국가공용차에 속하는 운전자의 종속을 해함이 없이,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운영에 관련된 지침과 명령을 내린다.

제16조

1. 헌법재판소장은 전원재판부와의 관계가 없는 사항의 권한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a) 헌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고용계약을 제외한 직원과 관련된 사항

b) 사무처장에게 계약기관으로서 해당하는 권한

어떤 경우든 헌법재판소와 국가의 다른 헌법기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권한 행사 위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다.

제17조

부재 또는 질병으로 공석인 경우, 헌법재판소 부소장이 헌법재판소장을 대신하고, 상기 사유로 부소장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되면 가장 오래 재직한 재판관이, 그리고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 연장자순에 의한다.

제18조

1. 수장은 비서실의 보조를 받고, 비서실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자유롭게 임명한다. 비서실장은 임시 공무원의 특성을 지닌다.

2. 비서실장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 헌법재판소장의 개인 비서를 관리한다.

b) 일반기록보관소에 관한 이 규칙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한, 수장의 기록을 구성하고 보관한다.

c)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사용하는데 이익이 되는 일반적인 성격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d) 헌법재판소와 언론 간의 관계에 유의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행위에 획득한 정보의 내용을 제공하며, 헌법재판소 기관 포털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e) 의정서에 따른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행해지는 기관적 성격의 모든 행위와 방문의 계획을 관리한다.

f) 헌법재판소장이 위임한 기타 구체적인 업무

제19조

헌법재판소조직법 제9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청은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한 헌법연구관에게 보고된다. 소청의 제기, 처리 및 결정은 공공행정 및 일반행정절차에 관한 법 30/1992 제7장 제2관의 소청 규정에 따른다.

제3관 운영위원회

제20조

1. 운영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부소장, 두 명의 재판관 및 사무처장으로 구성되고, 사무처장은 간사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할 수 있지만 투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2. 재판관은 각 재판부에서 한 명씩 전원재판부에서 지명되고 매년 교체된다.

제21조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 이 규칙 제2조 e)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 공무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임명하는 관리직 또는 노동직 직원 선발을 위한 공고와 시험 기준을 승인한다.

b) 전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를 결정하는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정한다.

c)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받는다.

d) 이 규칙 제2조 j)의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기 전에 전원재판부에서 정한 금액을 상회하는 지출 내용을 확인한다.

e) 이 규칙에 의해 또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제안에 의해 부여된 기타 다른 권한

제22조

1. 운영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또는 어느 구성원이 심의대상을 표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

2. 회의와 결의는,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 내용과 채택된 결의는 모든 재판관에게 전달된다.

제4관 사무처장

제24조

사무처장은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선출된다. 이 규칙 제2조 d)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임기는 3년이다.

제25조

1. 헌법재판소장의 권한과 지시에 따라 사무처장은 다음을 행한다.

a)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부소장, 전원재판부, 재판부에 해당하는 권한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대표를 맡는다.

b) 주심 재판관에 해당되는 권한과 이 규칙 제62조 제2항 a)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전원재판부가 정할 수 있는 지침에 따라 재판 담당계획을 위해 헌법재판소장을 지원하고, 이 담당계획의 틀에서 헌법재판 사건이나 헌법적 성격을 갖는 사안을 헌법연구관에게 배분, 조정 및 일반 지시

c) 각 부서장의 직접적인 책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 업무의 관리 및 조정

d) 헌법재판소장이나 전원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지휘 및 징계

e) 이 규칙 제21조 a)에 따른 직위 대상에 관한 절차의 기준을 제시한다.

f) 10일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하는 강의 또는 연구를 행하는 것에 관한 신청의 허가를 결정한다.

g) 헌법재판소 예산지출을 위한 신용관리

h) 경비의 승인

I) 지불의 명령

j) 이 규칙 제34조 제2항 e)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 법리의 정리, 분류 및 발간

2. 사무처장은 그의 권한사항에 관한 내부지침을 공포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장이 사전에 정한 분야의 협약과 관련하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과 협의 또는 조율해야 한다.

4.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장의 제안에 따라 전원재판부와 합의하여 한 명 이상의 헌법연구관을 사무처장 지정 하에 둘 수 있다.

제26조

1.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중에서 사무처장을 선출할 수 있고, 사무처장은 다음을 행한다.

a) 부재 또는 질병으로 공석인 경우 사무처장을 대신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면,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한 헌법연구관이 대신한다.

b) 주심 재판관에 해당하는 것을 저촉하지 않으면서, 사무처장의 위임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전원재판부와 합의를 통해 새로운 사건의 사전심사에 관한 헌법연구관의 업무 배분, 조정 및 일반 지시

c) 전조 제1항의 a), b), 징계제도와 관련된 d), 그리고 f)를 제외하고, 사무처장의 특정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 사무처장의 위임은 사전에 헌법재판소장의 허가를 요한다.

d) 헌법재판소장, 사무처장에 의해, 경우에 따라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해 부여된 기타 지원 또는 보고

2. 사무처장은 사무처장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고, 본조에 따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전원재판부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한 한 명 이상의 헌법연구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1관 업무 및 부서

관리 업무

제27조

1. 헌법재판소의 여러 기관에 부여된 권한과 담당을 침해하지 않고, 관리국은 재무 및 회계 관리, 직원 및 자료에 대한 권한 부여, 인사 관리, 시설의 유지 및 보존, 일반기록 관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업무나 다른 부서에 부여되지 않은 일반적 성격을 갖는 다른 업무의 개발을 담당한다.

2. 관리국장은 사무처장이 재정적, 경제적 및 인사적 성격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사무처장을 지원한다. 해당 부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적 성격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관계 문서를 처리하고 해결을 제시하는 것은 관리국장의 책임이며, 헌법재판소장이나 사무처장이 위임하는 행위를 집행하거나 관리를 수행한다.

제28조

(폐지)

제29조

1. 관리국장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헌법연구관의 법적 체계에 상응하는 지위와 보수를 받는다.

2. 부재 또는 질병으로 공석인 경우,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는 관리국장을 일시적으로 대신하는 헌법연구관을 지명한다.

재판기록 및 일반기록

제30조

헌법재판소에 송부되거나 헌법재판소가 발부하는 모든 문서는 재판기록에

의하고 전원재판부에서 심판국장이 담당한다. 내부 배포는 다음 규칙에 따라 행해진다.

a) 관할 사안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심판국장에 전달한다.

b) 다른 문서는, 재판기록으로서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부서 또는 소속에 전달한다.

제31조

1. 헌법재판소가 권한과 활동을 행하면서 수집하거나 생성하거나 보존하는 모든 문서는 헌법재판소 기록의 일부이고, 문서 자산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기록에 관한 구성과 운영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확립된 규칙에 따른다.

2. 헌법재판소의 일반기록에 포함되는 것을 해하지 않는 한, 재판절차에 관계된 문서의 기록은 심판국장의 권한 행사에 따른 지침에 의해 보관된다.

연구 업무

제32조

연구 업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리, 판례 및 입법 분야의 업무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서 및 문헌 업무

제33조

1. 도서 및 문헌 업무는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관리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관리하며, 기관 성격의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는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학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또한 도서 및 문헌 업무는 헌법재판소의 출판 계획을 준비하고 집행을

포함한다.

헌법적 법리 업무

제34조

헌법적 법리 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헌법재판소 결정과 헌법적 법리에 관해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발간, 출판의 기획 및 관리
- b) 재판통계

정보 업무

제34조의2

정보 업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또한 이것의 보안 유지와 통신의 보존
- b) 사용자에게 기술지원의 제공

제1.2관 부서의 내부구성

제35조

헌법재판소 부서의 내부구성과 이에 배정된 직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직군에 따른 결과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권한과 임무의 배분은 각 부서의 장에 속한다.

제36조

헌법재판소 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자이거나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직군에 대하여 사전에 요청을 받은 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헌법연구관 또는 공공행정 소속 A1에 속하는 공무원이 맡는다.

제37조

(폐지)

제38조

(폐지)

제2절 감사

제39조

1. 헌법재판소의 감사관은 사무처장이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내용의 제안에 개입하여,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타당한 비관을 서면을 통해 제출한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또는 다른 기관의 행위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적법성에 관해서 사무처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또한 감사관은 예산 문제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자문을 제공한다.

3. 부재 또는 질병으로 공석인 경우,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헌법연구관이 감사관을 대신한다.

제3절 의견 및 전직 재판관

제40조

헌법재판소 의견의 내부서열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부소장, 재직 연수가 오래된 재판관, 동일한 재직 연수라면 연령순에 따른다.

제41조

헌법재판소에서 개최하는 사법적 성격이 아닌 공공 행사는, 국가가 일반

적 성격으로 정한 의전서열과 이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른다. 전직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총평의회 의장 다음에 위치하고, 전직 재판관은 장관 다음에 위치한다.

제42조

전직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부소장,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합의에 따른 특권을 가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되는 사법적 성격의 엄숙한 행사 참석시 우선적으로 배석 받는다.
- b) 헌법재판소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시설물과 업무를 품위에 맞게 사용한다.
- c) 헌법재판소 발간물을 수신한다.

제2장 인사부문에 관한 공통규정

제1절 인사직급의 여러 종류

제43조

- 1. 헌법재판소의 인사는 공무원직, 임시직 또는 노동직일 수 있다.
- 2. 헌법재판소조직법 제97조 제1항에 의해 조직에 임명된 헌법연구관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 공무원은 사법행정과 공공행정의 직업 공무원이며, 위원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파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정된다.

제44조

- 1.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헌법연구관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단일 조직을 구성하는 직업 공무원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임시직의 헌법연구관을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다. 임명된 자는 다음과 같은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a) 최소 5년 이상 교수 또는 연구기능을 수행한 법률분야의 대학교수. 그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립 또는 사립대학에서의 계약 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지위를 증명할 수 있게 공공기관으로부터 최소한의 필요한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b)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관과 검사

c)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학 학사 조건의 A그룹의 집단 내지 범주에 속한 공무원

d)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

2.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은, 경력직이든 임시직이든 불문하고, 헌법재판소가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해 일임한 연구, 보고 또는 자문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필요한 자격을 갖춘 다른 공무원에게 배정되지 않는 한, 부여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행정기능을 헌법연구관이 수행한다.

3.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에 업무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원래의 직업 또는 기관에서 특별공무 상태로 된다.

제45조

1. 심판국 조직에 있는 심판국장은, 헌법재판소에 속한 직업 공무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관할, 사법공증 및 법원과 재판소의 조직법과 절차법상 그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에 배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헌법재판소에 배정된 심판국장은 사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라 원래의 조직에서 특별공무 상태로 된다.

제46조

1. 절차 및 행정의 관리, 절차 및 행정의 처리, 사법 지원 또는 공공행정

의 집단 또는 범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기타 직업 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동조에 따른 공무원은, 그의 자격 정도와 원래의 집단 또는 범주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업무 유사도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배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3. 헌법재판소에 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원래 소속되었던 집단 또는 범주에서 특별공무 상태로 된다.

제47조

1. 헌법재판소의 직군에 따라 신입 또는 특별 자문의 비상임 기능을 담당하고자 헌법재판소의 임시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른 임시 직원은 다른 공공행정의 직업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제48조

(폐지)

제49조

헌법재판소의 권한 행사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사무, 문서 보조, 행정 지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근로제도 하에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조직법, 본 규칙, 다른 규범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시 직원은 노동법 및 적합한 경우 관련 협약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50조

(폐지)

제51조

상기 조문에서 언급된 직원은 헌법재판소조직법, 본 규칙, 다른 규범의 규정과 헌법재판소의 운영기관이 내린 결정의 적용을 받는다. 사법행정 업무 직원에 관한 현행 법률과 경우에 따라 공공기능 분야의 법률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 보충적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제2절 인사채용의 방식

제52조

1. 헌법재판소의 직업 공무원 및 근로제도에 따른 인사의 편입은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시험, 선발고사 또는 자유로운 지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임시직원의 경우 자유로운 임명을 통해 선발될 수 있다.

2. 이 규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임시배정 형태로 채용할 수 있다.

제53조

1. 헌법연구관 소속으로의 편입은 본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채용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2. 헌법연구관의 채용인원에는 본 규칙 제44조 제1항 및 본조 제3항의 내용에 따른 임시직 배정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3. 임시직 헌법연구관의 지명은 재판관 3명의 제안으로 과반수에 의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자유롭게 결정한다.

임기는 3년이고, 상기 전문에 따른 제안과 요청되는 정족수에 의해, 임기 만료 전에 동일한 기간으로 최대 두 번 연장될 수 있다.

4. 본 규칙 제62조 제2항 a)에 언급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임무와 사무처장이나 사무차장의 기능을 수행할 자의 임무는 전항에 따른 임시직 요건과 갱신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적어도 해당 기능이나 직위를 수행하는 동안은 유지된다. 상기한 자들의 임무가 종료되면, 한 명 이상의 헌법

연구관은 특정 재판관의 협력자로 새롭게 지명되거나 전향 후문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임시직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에 업무를 제공하는 동안, 권한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에 부합하는 한, 헌법연구관 집단의 구성원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6. 임시직 헌법연구관의 사직은, 자발적인 의사 외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결정된다.

a) 상시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제안에 의해 전원재판부에서 합의하는 경우

b) 임무 3년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동조 제4항에 따른 직위나 기능이 종료되어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의해 헌법재판소 업무의 연속성이 더 이상 없게 된 경우. 본 규칙 제62조 제2항 a)에 언급된 헌법연구관의 경우, 규정에 따라 특정 재판관과의 업무가 종료되고 2개월 후 사직이 확인된다.

c) 은퇴 또는 경우에 따라 공무원 자격 상실의 경우

제54조

헌법재판소의 관리국장은 공공행정 A그룹 공무원 중에서 자유로운 임명 절차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제55조

1. 사법행정 또는 공공행정에 있던 직업 공무원의 헌법재판소 배정은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수장의 채용공고에 의해 이루어진다.

2. (폐지)

3. 헌법재판소의 임무는 해당 공무원 범주의 일반직을 맡기기 위한 것이거나 특정 직위를 맡기기 위한 것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본 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경력, 해당 집단 또는 범주에 속한 공무원 중에 다른 수당의 보수를 받더라도, 사무처장은 업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다른 직무에 배정할 수 있다.

제56조

헌법연구관, 관리국장, 지명된 공무원의 임명은 헌법재판소장이 행한다.

제57조

직위 목록에 명시된 직의 경우, 직업 공무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배정은 자유로운 임명 절차에 의할 수 있다.

제58조

1. 헌법재판소는 일시적으로 업무의 위임을 통해 사법행정 또는 공공행정의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당 장관이나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폐지)

3. 업무 위임의 경우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위임을 허가한 기관의 결정으로 중지되는데, 이는 해당 기관에서 제안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의할 수 있다.

제59조

헌법재판소장은 본 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근로제도에 따른 직원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절 인사 정원 및 일자리 목록 제공

제60조

헌법재판소조직법 추가규정 첫째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인사 정원을 확립하는데, 국가일반예산법에 의해서만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61조

1. 헌법재판소의 일자리 목록에는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의 일자리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임시직 및 노무직이 수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일자리 목록에는 어떤 경우든 해당 직의 명칭 및 핵심적인 특성, 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해당 보수를 표시한다.

3. 일자리의 생성, 수정, 통합, 삭제는 일자리 목록에 따라 구체화하고, 인사 정원 내에서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는 언제든지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62조

1. 헌법재판소 공무원 또는 노동직의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헌법재판소 내 공무원 또는 직원을 어떤 단위 또는 산하기관에 배정하는 것과 연관되는 경우, 업무의 필요에 따라 사무처장이 결정한다.

2. 전항의 내용은 특정 업무를 헌법연구관에게 배정하는 경우 제외되는데, 이때 다음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a) 각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고 있는 헌법연구관 중에 최대 2명을 해당 재판관실의 협조자로서 지정해 줄 것을 전원재판부에 제안할 수 있다.

b) 해당되는 경우 특정 업무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배당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에 속한다. 그밖의 경우, 헌법연구관 간에 업무의 일반적인 배분은 사무처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c) 헌법연구관에 대해 상위의 행정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본 규칙의 조문에 따라 정한다.

제63조

1. 전원재판부, 재판부, 해당 부서장에 대한 기능적 소속에 반하지 않는 한, 심판국장은 행정적 효력의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사무처장에 따른다.

2. 심판국에 배정된 인사, 그 외에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노무직 인사는, 인사 상급자인 사무처장에 해당되는 것에 반하지 않는 한, 전원재판부,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장, 헌법연구관, 심판국장이나 배정된 업무 또는 부서의 장에 따른다.

제64조

1. 공석, 휴가, 부재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계약직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명을 통해 적절한 경우 동일한 범주의 공무원 또는 계약직 직원으로 대체된다.

2. (폐지)

3. 임시직 공무원은 동조에 따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또는 노무직 인사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는 재판관, 헌법연구관 또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에 의해 사무처장의 지명,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